

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(전자영 의원 대표발의)

용 인 시 의 회

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제2022 - 호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2.

발 의 자 : 전자영 의원

☐ 구 분 : 제정

☐ 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에 따라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용인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☐ 주요내용

-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위치(안 제2조)
-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운영시간,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안 제10조)
-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☐ 제정조례안 : 별첨

☐ 관계법령 발췌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

☐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에 따라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용인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위치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영상문화의 진흥과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용인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(이하 “스튜디오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스튜디오의 위치는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296-1, 297-5 일원으로 한다.

제3조(시설) 스튜디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명 스튜디오
2. 자연광 스튜디오
3. 사무실 및 회의실
4. 편집실
5. 분장실
6. 그 밖의 부대시설

제4조(기능) 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 지원
2.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창작활동
3. 지역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
4. 시민들을 위한 영상교육·전시실 운영
5. 그 밖에 스튜디오의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축

제5조(운영시간 등) ① 스튜디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:00~18:00를 기준으로 하고, 사용시간은 1회 2시간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사용신청 등) ① 스튜디오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 등(다수인이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)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사용 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스튜디오의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서를 작성·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되,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용허가 제외대상) 시장은 시민 등의 스튜디오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2.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3. 주된 사용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4.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사용취소 및 제한)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1.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
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3. 스튜디오 시설 및 관련 장비의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
4.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9조(사용자의 의무 등) ① 스튜디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스튜디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스튜디오 사용 중 안전수칙 위반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
제10조(사용료) 스튜디오의 시설 사용료는 면제한다.

제11조(위탁) ① 시장은 스튜디오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튜디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영상미디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입 안 자
자치행정위원회	전자영 의원

[별지 제1호서식]

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사용 신청서			
성 명 (단체명)		생년월일	
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
주 소		이메일	
사용일시	년 월 일 시 ~ 월 일 시		
사용목적			
사용계획	1. 사용시설 : 2. 사용인원 :		
담 당 자	(인)		

☐ 스튜디오 사용 주의사항

- 사용 중 시설이나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,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-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에게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위와 같이 「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사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단체명) : (서명)

☐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

1. 제공목적 :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의 시설, 장비 사용에 따른 본인 확인
2. 제공받는 자 : 용인시
3.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휴대(전화)번호, 주소, 이메일 등
4. 제공받은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스튜디오 사용 목적 달성 시까지

※ 신청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용허가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

년 월 일

신청인(단체명) : (서명)

용인시장 귀하

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사용에 대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			
미 성 년 자 성 명		미 성 년 자 생 년 월 일	
법 정 대 리 인 성 명		법 정 대 리 인 생 년 월 일	
법 정 대 리 인 연 락 처			
법 정 대 리 인 주 소			

미성년자인 상기인이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를 사용함에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·장비 등의 파손 및 분실 등의 책임은 법정대리인 본인이 질 것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법정대리인 성명 : (서명)

☐ 사용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

1. 제공목적 :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의 사용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

2. 제공받는자 : 용인시

3.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미성년자의 성명, 생년월일, 법정대리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 등

4. 제공받은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스튜디오 사용 목적 달성 시까지

※ 신청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용허가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함☐ 동의하지 않음☐

년 월 일

법정대리인 성명 : (서명)

용인시장 귀하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61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